

19세기 후반 대청(對淸) 사신의 파견과 역할

-전통적 외교의 지속과 변용의 측면을 중심으로-*

김창수**

-
- I. 머리말
 - II. 19세기 후반 조선·청 관계의 재편과 사신 파견
 - III. 19세기 후반 두 종류의 사신과 역할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세기 후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전통적 외교방식인 사신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무역장정의 규정 중 기존의 사신 파견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였다. 고종 19년 만들어진 무역장정은 무역과 관련된 통상(通商)뿐 아니라 조선·청 양국의 외교 방식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19세기 후반 파견된 사신의 빈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고위 관원을 정사(正使)·부사(副使)로 임명하거나 또는 역관을 책임자로 삼아 정기·비정기적으로 사신을

* 본 논문은 김창수, 2016, 『19세기 朝鮮·淸 관계와 使臣外交』,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의 제5장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파견하였다. 셋째, 사신의 파견 목적을 파악하도록 한다. 19세기 후반 다양한 국내외의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사신에게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었는지, 당시 사신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점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19세기 후반 조선·청 관계 속에서 사신이 수행한 역할을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관행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지속하고 변용되는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사신, 재자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외교관, 전통 관행

I. 머리말

개항을 기점으로 조선은 조약을 통해 새로운 국제관계에 편입되었다. 청과의 관계에서도 고종 19년(광서8, 1882)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하 ‘무역장정’)을 체결함으로써 불평등한 내용이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조약에 기반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무역장정’의 규정에 따라 북양대신(北洋大臣)이 파견한 청 관원이 조선에 상주하면서 양국의 외교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개항 이후 조선과 청은 대외관계의 면에서 사신(使臣)을 파견하는 방식과 조선 주재 청 관원과 교섭하는 두 종류의 외교방식이 공존하는 독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은 유길준(兪吉濬)이 말한 ‘양절체제(兩截體制)’ 즉 조선-청, 조선-외국(일본 및 서양)과의 국제관계를 달리하는 동시에,¹⁾ 청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신의 파견과 관원의 상주

1) 개항기 조선·청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조선·청의 장정체제와 조선·외국의 조약체제가 공존했던 이중적 외교체제로 보고 있다. 다만 유바다의 경우, 청이 주장한 조선의 지위에 관한 용어들이 『만국공법』에 근거했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조선·청 관계를 서양과 다른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유바다, 2017,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관련하여 이중적 외교체제에 대해서는 정용화, 2004, 「제4장 양절(兩截) 체

라는 이중적인 방식을 운용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조선·청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근대적 요소, 특히 조선의 주권(主權)과 관련된 소재들이 주요한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시기 조선·청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종번(宗藩) 관계를 전제로 하여 청의 종주권(宗主權)이 강화된 형태로 판단하는 연구, 전근대 종속관계에서 근대적 종속관계로 재편 또는 전환되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²⁾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연구자들은 청의 부당한 침탈과 조선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논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³⁾ 이중 조선의 외교관은 정치적 영역에서 타국에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공사(公使) 파견을 둘러싸고 이를 저지 또는 역할을 축소하려는 청의 압박과 조선의 대응이 주목되었다.⁴⁾ 또한 근대 외교의 중요한 속성이 상주(常駐)외교의 시작으로 서 천진 주재 조선 관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⁵⁾

제론」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문학과지성사 ; 권혁수 2007, 「兩截體制와 19세기말 조선의 대중국외교」,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해안 ; 김민규, 2002,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청일 수호조규(1871년) -“조규체제”의 생성』, 『대동문화연구』 41 참조.

- 2)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일일이 제시하기 어려울 만큼 축적되었다. 주요한 연구사 정리로는 구선희, 2009, 「근대 한중관계사의 연구경향과 쟁점 분석」,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 손성욱, 2017, 「최근 중국학계의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2007~2016)」 『동양학』 69 ; 이동욱, 2020, 「한국 학계의 근현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성과」,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 3) 대표적으로 구선희, 1999, 『韓國近代 對淸政策研究』, 해안 ; 김정기, 1994, 『1876~1894年 淸의 朝鮮政策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병기, 19885, 『近代韓中關係史研究 : 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淸交涉』, 단국대출판부.
- 4) 송병기, 1972, 「소위 「三端」 에 대하여 -근대 韓淸關係史의 한 연구」, 『사학지』 6-1 ; 한철호, 2019, 「초대 주미전권공사 朴定陽의 활동과 그의 의의」, 『한국사학보』 77 ; 2010, 『한국근대 주일한국공사 파견과 활동』, 푸른역사.

이상의 연구들은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주권의 상징인 외교관을 둘러싼 조선·청의 정치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주권, 공사(公使) 등의 근대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결과, 장기간 지속되었던 전통적 조선·청의 전통적 관계가 어떻게 지속·변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야에 넣지 않은 한계가 있다. 조선은 청과 인조 15년(1637)년 국교를 맺은 이후 매년 개항 직전까지 매년 2.78회의 사신을 파견해왔다.⁶⁾ 더하여 조선은 사신의 파견여부, 파견시기, 의례적 위상 등을 통해 청과의 우호를 강화하거나 정치적인 공조를 취해 왔다.⁷⁾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신을 통한 외교 방식이 19세기 후반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신이 19세기 후반 조선·청 관계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양적인 측면에서 사신파견 빈도가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외교의 수단으로 의미를 지닐 만큼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이들 사신이 실제 조선과 청의 대외관계에서 외교적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상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19세기 후반 사신의 역할을 다시 조망할 여지가 만들어질 것이다.⁸⁾

5) 권혁수, 2007, 「『兩截體制』와 19세기 말 조선왕조의 대중국외교-초대 天津駐節督理通商事務 南廷哲의 활동을 중심으로-」,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해안 ; 한철호, 2007, 「한국근대 주진대원의 파견과 운영(1883-1894)」, 『동학연구』 23, 59~63쪽 ; 森万佑子, 2013, 「朝鮮政府の駐津大員の派遣(一八八三-一八八六)」, 『史學雜誌』 122.

6) 전해중, 1979, 『한중관계사 연구』, 일조각, 71쪽.

7) 김창수, 2016, 『19세기 조선·청 관계와 使臣外交』,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사신은 엄밀하게 정의하면 正使와 副使로 이루어진 관원을 말하지만 본고에서는 국왕 명의를 문서를 지참했다는 점에서 역관이 임명되는 齎咨官을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개별 파견을 설명할 때는 사행(使行)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였다. 예) 진하겸주청행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첫째, 무역장정의 규정 중 기존의 사신 파견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한다. 고종 19년 만들어진 무역장정은 무역과 관련된 통상(通商)뿐 아니라 조선·청 양국의 외교 방식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19세기 후반 파견된 사신의 빈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고위 관원이 수반이 되는 사신과 역관을 임명하는 재자관(齎咨官)을 정기·비정기적으로 파견하였다. 셋째, 사신과 재자관의 파견 목적을 파악하도록 한다. 19세기 후반 다양한 국내외의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사신에게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당시 사신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점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19세기 후반 조선·청 관계 속에서 사신이 수행한 역할을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관행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지속하고 변용되는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II. 19세기 후반 조선·청 관계의 재편과 사신 파견 양상

사신 파견이 갖는 시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항 이후 시기를 외교사의 측면에서 구분하도록 한다.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개항이 상징하는 것은 전통적 사대교린(事大交隣) 관계에서 벗어나 조약에 근거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는 점이다. 임오군란 이전까지 청은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간여를 회피하면서 무비자강(武備自強)의 지원, 조약에 대한 자문 및 조약체결을 적극 권고하는 가운데 형식상에서라도 속방(屬邦)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⁹⁾ 그

9) 임오군란 이전의 조선·청 관계에 대해서는 구선희, 1999, 「제1장 初期開化策의 수립과 조선·청관계」, 『한국근대 대청정책연구』, 혜안 ; 권혁수, 2000, 「제3장 李鴻章의 위기의식과 조선에 대한 문호개방 勸告」, 『19세기 말 한중 관계사 연구』, 백산자료원 참조.

렇지만 형식의 측면에서조차 속방체제와 조약체제는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조일수호조약 및 조미수호조약 등에서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던 점에서 해당 조약들은 청이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러한 가운데 고종 19년(1882) 조약과 관련된 문의를 위해 어윤중(魚允中)을 파견할 때, 고종은 조공사신의 폐지를 논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¹⁰⁾ 고종과 어윤중이 사신만이 아니라 조공책봉관계의 전면적 폐지를 기획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색은 임오군란의 발생과 청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 모두 와해되었다.¹¹⁾ 그리고 청과의 새로운 관계는 ‘무역장정’을 근거로 외교상 불평등과 청의 내정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첫 번째 분기는 임오군란과 이에 대한 결과로서 새로운 관계구조가 형성되는 고종 19년(1882)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상주외교 체제이다. ‘장정’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북양대신(北洋大臣)의 신임장을 가지고 파견된 상무위원(商務委員)은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전적으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해원(該員)과 조선 관원이 내왕할 때에는 다 같이 평등한 예로 우대한다. 중대한 사건이 생겼을 때 조선 관원과 임의로 결정하기가 편치 않을 경우, 북양대신에게 상세히 청하여 (북양대신이) 조선 국왕에게 자문(咨

10) 어윤중의 派使駐京에 대해 자주적 제안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중원은 事大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통상문제까지 청에게 상당 부분을 양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적으로 본다(김종원, 1999, 『근세동아시아사연구』, 해안, 311~313쪽).

11) 권혁수, 2000, 앞의 책, 92~112쪽 ; 김용구, 2004,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도서출판원, 101~112쪽.

文)을 보내 그 정부에서 처리하게 한다. 조선 국왕도 대원(大員)을 파견하여 천진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다른 관원을 개방한 중국의 항구에 나누어 파견하여 상무위원으로 총당한다.¹²⁾

조선 관원의 북경 상주는 거부되고 장소는 천진(天津)으로 변경되었다. 청 황제와 서양 열강의 동등한 지위는 외국 공사(公使)의 북경 상주를 통해 국제법적인 측면과 함께 시각적인 면에서도 구현되었다. 청의 입장에서 외국 공사의 북경 상주는 황제의 신성한 수도를 망가뜨리는 행동이었다. 때문에 제1차 아편전쟁 이후에도 상당 기간 강하게 거부하다가 결국 천진조약 체결 이후야 비로소 시행된 사항이었다.¹³⁾ 따라서 조선 관원을 북경에 상주시키는 것은 의례의 측면에서 외국 공사와 동등해질 수 있기때문에 청조의 입장에서 조선을 속방으로 간주하는 한, 외국 공사와 조선 관원을 북경에 함께 거주시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아울러 천진의 북양아문(北洋衙門)에서 조선의 외교 사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도 상주 지역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청은 광서 9년(고종20, 1883)부터 진수당(陳樹棠)을 상무위원으로 임명하여 조선에 파견하였다. 조선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선사(領選使)의 전례를 참고하여 조선주진상무공서장정(朝鮮駐津商務公署章程)을 마련하였다. 고종 21년(광서10, 1884) 3월 초대 주진대원(駐津大員) 남정철(南廷哲), 종사관 박제순(朴齊純), 서기

12) 『高宗實錄』 고종 19년(1882) 10월 7일, “嗣後 由北洋大臣札派商務委員 前往駐紮朝鮮已開口岸 專爲照料本國商民 該員與朝鮮官員往來 均屬平行 優待如禮 如遇有重大事件 未便與朝鮮官員擅自定議 則詳請北洋大臣 咨照朝鮮國王 轉札其政府籌辦 朝鮮國王亦遣派大員 駐紮天津 並分派他員至中國已開口岸 充當商務委員”

13) 외국 공사 북경 상주에 대한 청조의 거부와 논의 과정은 王开玺, 2009, 『清代外交禮儀的交渉与論争』, 人民出版社: 北京, 376~401쪽.

관 성기운(成崎運) 등이 국왕에게 사폐(辭陛)하였다.¹⁴⁾ 그런데 천진에서의 외교통로는 주진대원으로 단일화되지 않았다. 대원군이 보정부(保定府)에 있는 상황에서 조선에서는 대원군에게 문후관(問候官)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거나 이홍장에게 문의사(問議使)를 파견하여 대원군의 방환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따라서 주진대원이 설치되었음에도 별도의 사신들이 천진을 오가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고종 22년(광서11, 1885) 8월 대원군이 귀국한 이후 종식되었고, 천진의 외교업무는 주진대원이 오롯이 담당하게 되었다. 고종 23년(1886) 내무부의 건의로 주진대원을 주진독리통상사무(駐津督理通商事務)(이하 ‘주진독리(駐津督理)’)로 변경하고 새로운 장정을 마련하였다.¹⁵⁾

조선·청 외교 관계의 측면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고종 20년(광서9, 1883)에 예부에서 보낸 다음의 자문이다.

만일 총리각국사무아문에 자문(咨文)을 보낼 일이 있다면, 밖에서는 주진(駐津)조선관원을 통해 북양아문을 거쳐 자문을 전달하고, 북경에서는 예부[本部]를 통해 전달하며, 직접 문서를 보내서는 안 되고 조선 사신도 직접 총리아문으로 가서 알현을 청해서는 안 됩니다.¹⁶⁾

위의 자문에서 말하는 밖[外]은 북경과 대비되는 장소로 조선 또는 천진을 지칭한다. 따라서 예부의 자문에 따르면 조선에서 총리

14) 한철호, 2007, 「한국근대 주진대원의 파견과 운영(1883-1894)」, 『동학연구』 23, 59~63쪽; 권혁수, 2007, 「兩載體制와 19세기 말 조선왕조의 대중국외교-초대 天津駐劄督理通商事務 南廷哲의 활동을 중심으로-」,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해안 ; 森万佑子, 2013, 「朝鮮政府の駐津大員の派遣(一八八三-一八八六)」, 『史學雜誌』 122.

15) 한철호, 2007, 앞의 논문, 63~64쪽.

16)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0년(1883).

아문으로 보내는 모든 문서는 앞으로 북양아문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했다. 또한 조선 사신이 북경에 있을 경우에는 서양 각국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총리각국사무아문(이하 ‘총리아문’)과 조선 사신이 직접 교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선의 교섭 창구로 기존의 예부만을 열어두겠다는 내용도 첨가되어 있다. 따라서 총리아문과 교섭할 수 있는 청과의 통로는 북양아문과 예부뿐이며 사신을 북경으로 파견하지 않을 경우, 그나마 교섭의 대상은 북양아문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신이 갖는 외교적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과 청은 매우 이른 시기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도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서울에서 발송하는 자문은 의주(義州)를 거쳐 봉황성(鳳凰城)에 도착, 여기에서 다시 심양(瀋陽)을 지나 북경에 도착하는 방식이었다. 무역장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러한 문서전달 방식은 유지되었으며, 목적지를 천진의 북양아문으로만 변경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인천과 천진 사이에는 군사와 상업적 목적으로 오가는 운선(輪船)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문서의 전달 속도도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시기 사신은 지속적으로 파견되었다. 조일 수호조약과 무역장정이 체결된 개항기의 사신 파견의 빈도를 파악해보자.¹⁷⁾

17) 사신 파견은 고종 18년까지는 『同文彙考』 使行錄을, 고종 19년까지는 『通文館志』 紀年續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 이후 시기는 『承政院日記』 『高宗實錄』 기사 및 『고문서해제 X』(국립중앙도서관, 2013)에서 수록된 자문에 근거하였다.

<표-1> 19세기 후반 사행 파견 현황

기간 1876-1894	합계	정기사행	비정기사행	비고
사행	28회(1.55)	18회(1)	10회(0.55)	陳奏4회
재자·재주행	32회(1.77)	18회(1)	14회(0.77)	
기타	8회(0.44)		8회(0.44)	문후 2회, 문의 6회

()는 연평균

조일수호조약이 체결된 고종 13년(1876) 2월 이후부터 청일전쟁의 패배로 사신 파견이 중단되는 고종 31년(1894)까지의 18년 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기사행은 음력 1월 1일 정조(正朝)에 참석하는 사행을 말하며, 사은 또는 진하 등 다른 임무를 겸하는 겸행도 포함하였다. 비정기사행은 정기 사행과 관계없이 특정 사안으로 인해 별도로 파견하는 사행을 말한다. 사행에는 조선국왕에 황제에게 전하는 외교문서[표문(表文), 주문(奏文) 등]와 예물[方物], 세폐(歲幣) 등을 지참했으며 참여 인원 300명 내외, 총 4~5달이 소요되었다. <표-1>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신 파견이라는 종래의 방식이 청일전쟁 직후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의 요구를 청에게 전달하는 진주가 사신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선이 개항시기에도 여전히 사신을 통해 외교적 문제를 처리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고종 19년(1882) 즉 임오군란을 전후한 시점부터 대원군이 환국하는 고종 22년(1885)까지의 기간이 불과 4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7번의 사행 중 네 번의 진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과 청의 관계에 많은 변수가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또 다른 특징은 재자·재주행이 32회나 파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중 18회는 청의 역서를 수령하기 위해 파견한 것이었다. 재자관은 조선국왕이 청의 예부(禮部) 등에 보내는 외교문서[咨文]을 지참했으며 방물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 인원 규모는 역관 이외에 역학(譯學)과 반당(伴尙)을 모두 포함해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¹⁸⁾ 따라서 정식 사행보다 시간과 경제면에서 훨씬 효과적인 사행 방식이었다. 때문에 조선 후기 전 기간에 걸쳐 긴급한 상황 있을 경우 재자관이 파견되었다. 재주관은 6품 이하의 문·무관 또는 역관이 선발되었으며 규모와 방식은 재자관과 동일지만 지참 문서가 주문(奏文)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⁹⁾

다만 주문을 지니지 않는 경우에도 재주관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사행을 하나로 합쳐서 분석하였다. 개항이라는 변화된 시점에서 재자관의 빈도가 높아지다가 임오군란을 계기로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해 재자관을 적극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1888년(고종25, 광서14) 홍삼에 대한 이금세(釐金稅) 면제 요청을 위해 파견된 이응준(李應浚)을 끝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기타는 문의사(問議使)와 문후사(問候使)를 말한다.²⁰⁾ 조선에서

18) 후대의 기록이지만 고종 9년(1872) 예부에서 보낸咨文에 따르면 재자관 李容肅 일행 총 10명에게 상을 내린다는 내용이 있다. 고종 22년(1885) 電線가설 및 대원군 환국을 문의하기 위해 閔泳翊 일행이 천진으로 출발했는데, 수행원 6명, 통사 1명, 종인 2명을 대동하였다(『고문서해제X』(국립중앙도서관, 2013), 2-5, 34쪽; 권석봉, 1981b, 「清廷에 있어서의 大院君과 그의 還國(하)」, 『동방학지』 29, 155쪽).

19) 조선후기 재자관의 파견 현황 및 활동에 대해서는 신세완, 2022, 「조선 후기 齎咨官의 사행 활동과 변화 양상」 『지역과역사』 50 참조.

20) 고종 20년(1883) 2월~3월 어윤중이 通化縣 知縣 張錫鑾과 中江貿易章程을 체결한 사안, 李重夏가 조선·청 국경 획정을 위해 2차례 파견된 사안은 변경에서 교섭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는 외교체제와는 층위를 달리하므로 다른 논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각각 논의 과정과 결과는 김종원, 1999, 앞의 책, 339~347쪽 ; 김형중, 2018,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참조.

는 통상 및 조약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천진으로 문의사를 파견하였다.²¹⁾ 고종 18년(광서7, 1881) 어윤중(魚允中)이 청과의 새로운 관계 및 조미수호조약과 관련해 이홍장과 논의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²²⁾ 어윤중보다 조금 일찍 파견된 영선사(領選使) 역시 문의의 역할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었기에 횡수에 포함했다.²³⁾ 무역장정의 논의를 위해 고종 19년(1882) 2월과 8월 두 차례 문의관을 파견하였고 모두 어윤중이 담당하였다.²⁴⁾ 고종 22년(1885) 러시아와의 조약문제 해명, 고종 22년 대원군의 한국 논의를 위해 파견되었다.²⁵⁾ 문의사는 조선 관원의 천진 상주와 대원군의 귀국을 계기로 사라졌다. 이밖에 보정부(保定府)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 대원군의 문안을 묻기 위해 천진으로 간 사행도 2회 확인된다.²⁶⁾

21) 당시 어윤중이 이홍장, 周馥 등과 논의한 내용 및 통상장정의 체결과정은 김종원, 1999, 「V. 東亞의 開港과 朝淸貿易關係의 變化」, 앞의 책, 참조.

22) 어윤중은 고종 18년 1월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9월 상해를 거쳐 10월 천진에 도착하여 이홍장을 만났다. 『從政年表』 고종 19년 1월 24일; 같은자료, 고종 19년 9월 12일; 같은자료, 고종 19년 10월 6일.

23) 領選使의 임무에 관해서는 권석봉, 1986, 「제5장 領選使行考」, 『청말 대 조선정책사연구』, 일조각 참조.

24) 어윤중은 고종 19년 2월 17일 서울을 출발하여 3월 19일 주북을 만나고 4월 23일 북경에 도착하여 자문(咨文)을 올리고 5월 13일에 다시 주북과 만남을 가졌다. 고종 19년 2월 고종 19년 8월 15일에 출발하여 같은 달 19일~23일까지 周馥, 李鴻章 등을 만나 통상장정을 논의했다. 『從政年表』 해당일자 참조.

25) 문의관의 파견시기와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고종 18년 9월 김윤식(領選使), 고종 18년 10월 어윤중(수신사로 파견되었다가 천진에 방문한 시기임), 고종 19년 8월 어윤중, 고종 22년(1885) 4월 민영익, 고종 22년 6월 金明圭이다.

26) 문후관의 파견시기와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고종 19년 9월 李載德, 고종 20년 5월 金晩植이다. 이밖에 사행의 부사(副使)를 문후관으로 차정한 경우도 3차례 있다. 고종 19년 11월 閔種默, 고종 20년 11월 李源逸, 고종 21년 11월 南廷哲이다.

전해종의 연구에 따르면 병자호란 이후부터 개항 직전까지 (1637~1875) 사행(使行)은 연평균 1.99회, 재자관은 1.7회로 양자를 합친 파견 빈도는 연평균 3.78회이다. 이 수치는 병자호란 직후 청의 내정 간섭이 매우 강했던 순치 연간과 강희 초반까지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19세기로만 한정해보면, 가정 연간부터 동치연간(1796~1874)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설정할 수 있는데, 해당시기의 연평균 사신파견 빈도는 사행 1.75회, 재자·재주행은 1.45회로 합계 3.20회였다.²⁷⁾ 위의 표와 비교하면 개항기 사신파견 빈도는 사행 1.55회, 재자·재주행 1.74 합계 3.29회로 19세기의 그것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정식 사신이 조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재자행이 높아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 사신은 개항기에도 외교의 수단으로서 이전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활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표의 두 번째 구간인 고종 19년(1882)~고종 22년(1885)이다. 해당 시기는 임오군란부터 갑신정변을 포함하는 정치적 격변기였는데, 다음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신파견이 이전시기보다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점은 개항기 양국 관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Ⅲ. 19세기 후반, 두 종류의 사신과 역할

1. 사신의 파견과 활동

조선 후기와 마찬가지로 개항기에도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외교 문서만을 보낼 수 있는 통로가 존재했다. 1880년대 초까지는 의주

27) 전해종, 1979, 『한중관계사 연구』, 일조각, 71쪽.

에서 심양 및 천진으로 보내는 방식이 존재했고, 갑신정변 이후에는 외교관서의 역할을 담당한 청의 통상교섭사의(通商交涉事宜)를 통해 북양아문 및 북경으로 외교문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문서만 보낼 경우 비용뿐 아니라 조선 사신들이 행해야 했던 속국으로서의 의례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사신은 지속적으로 파견되었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그것은 사신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의례적 위상, 그리고 거의 한 세기가 넘도록 사신을 통한 조선의 요청들을 청 황제가 대부분 수락해왔던 관행으로 인해 시도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관행은 19세기 후반 조선·청 관계의 일정한 변수가 되었다. 사신의 파견은 상국(上國)은 소국(小國)의 어려움을 도와 줘야 한다는 자소(字小)의 원칙을 강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개항 이후 파견된 정식 사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19세기 후반, 사신의 파견 양상²⁸⁾

순번	파견시기	파견목적	주요내용
1	고종13년(1876) 5월	진하	兩宮皇太后尊號 축하
2	고종13년(1876) 10월	절행	
3	고종14년(1877) 10월	절행	
4	고종15년(1878) 6월	고부	哲仁王后 告訃
5	고종15년(1878) 10월	사은·절행	
6	고종16년(1879) 11월	사은·절행	
7	고종17년(1880) 11월	진하·사은	武備요청 허락 감사
8	고종18년(1881) 6월	진위	東太后崩逝 위로
9	고종18년(1881) 10월	진하·절행	皇太后祔廟 축하
10	고종19년(1882) 7월	사은·진주	과병 감사, 대원군귀국 요청
11	고종19년(1882) 11월	진하·사은·진주	皇后尊諡축하/ 과병호위, 통상조약감사/ 대원군귀국 요청
12	고종20년(1883) 11월	절행·사은	
13	고종21년(1884) 6월	진주	吳長慶 사당 건립 요청
14	고종21년(1884) 11월	사은·절행	
15	고종22년(1885) 6월	진주	군대주둔연기 및 대원군귀국 요청

16	고종22년(1885) 11월	절행·사은	대원군귀국조치 감사
17	고종23년(1886) 11월	사은·절행	사신물품 면세 감사
18	고종24년(1887) 4월	진하	光緒帝 親政 축하
19	고종24년(1887) 11월	사은·절행	巨文島회복, 해외 사신파견 허락 감사
20	고종25년(1888) 11월	진하·절행·사은	皇后冊立, 歸政 후 皇太后尊號 축하
21	고종26년(1889) 11월	사은·절행	
22	고종27년(1890) 5월	고부	神貞王后 告訃
23	고종27년(1890) 11월	사은·절행	
24	고종28년(1891) 8월	진하·사은	皇上二旬萬壽 축하
25	고종28년(1891) 11월	절행	
26	고종29년(1892) 11월	절행·사은	
27	고종30년(1893) 11월	절행	
28	고종31년(1894) 6월	진하·사은	皇太后尊號 및 六旬萬壽 축하

*절행은 '삼절연공사'를 가리킴

전제적으로 분류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정례적인 삼절(三節: 聖節, 冬至, 正朝) 축하 및 연공을 전하는 정기 사행(이하 '절사'), 둘째 황실의 경조(慶弔)에 해당하는 진하(進賀) 및 진위(陳慰)행, 셋째 황제의 조치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사은(謝恩)행, 마지막은 조선의 요구를 전달하는 진주(陳奏)행 등 비정기 사행(이하 '별사')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사신파견은 개항기 이전 지속되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개항 이후 양국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기존의 관행이 갖게 되는 새로운 의미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례적인 절사는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고종 31년(1894)까지 단

28) 사신의 출발 목적과 시기에 관해서 고종 18년까지는 『同文彙考』 「使行錄」을, 고종 19년까지는 『通文館志』 紀年續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 이후 시기는 『承政院日記』 및 『고문서해제 X』(국립중앙도서관, 2013)에서 수록된 자문에 근거하였다.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파견되었다. 개항기 조선·청 관계에서 질서의 파견 자체가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을 비롯한 조공국은 중국이 수 천 년 동안 유지했던 천조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의례적 측면에서 필수적인 존재였다. 중국이 중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四夷)는 반드시 존재해야 했다.²⁹⁾ 앞서 건륭제가 자신의 칠순과 팔순 생일 때 조선과 같은 공순한 나라 이외에도 공기(貢期)가 일정하지 않았던 조공국들을 대거 초청한 것은 바로 천조의 위상을 과시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³⁰⁾

그러나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조공국들은 차례로 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속속 이탈해나갔다. 일시적 또는 단속적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했던 섬라(暹羅: 타이), 먼전(緬甸: 미얀마), 남장(南掌: 라오스) 등을 살펴보면, 섬라는 함풍 2년(철종3, 1852) 책봉 요청 사신을 마지막으로 사신 파견이 중단되었다. 먼전은 함풍 3년(철종4, 1853)에 사신을 보낸 이후 태평천국으로 20여년 간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광서 1년(고종12, 1875)에 최후의 사신을 파견한 후 광서 11년(고종22, 1885)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남장의 경우는 함풍 3년에 운남에 도착했지만 태평천국군으로 인해 북경으로 이동하지 못한채 운남총독을 통해 황제의 칙유(勅諭)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중국 방문이었다.³¹⁾

인도차이나반도의 나라들이 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주변부에 위치했다면 베트남과 유구는 질서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건륭 칠순을 기점으로 이들 나라에게 반포되는 조서(詔書)의 숫

29) 김선민, 2012, 「외국과 속국사이-正史를 통해 본 청의 조선 인식」, 『사림』 41.

30) 夫馬進, 2008, 「1609년 일본의 유구 합병이후 중국, 조선의 대류큐 외교-동아시아4국의 책봉, 통신, 그리고 두절」, 『이화사학연구』 37.

31) 李云泉, 2004, 『朝贡制度史论』, 新华出版社: 北京, 280~284쪽.

자도 늘었고, 또 곧이어 시현력도 전달하는 조치도 시행되었다.³²⁾ 그러나 유구는 1870년대 초에 발생한 일본의 대만 침공을 기점으로 청 질서에서 이탈하였고, 결국 오키나와현으로서 일본에 공식적으로 합병되었다.³³⁾ 베트남의 경우도 1870년대 ‘서공조약(西貢條約: 사이공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베트남 일부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권을 인정하였다. 이후 광서 8년(고종19, 1882) 프랑스의 해군과 흑기군(黑旗軍)의 전투를 거쳐 양국의 갈등은 광서 10년(고종21, 1884) 청불전쟁으로 이어졌고, 이듬해(광서11, 1885) 「중법회정월남조약(中法會訂越南條約)」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중주권을 완전히 상실했다.³⁴⁾

매년 음력 1월 1일 정조(正朝)에 자금성 태화전 앞에서 청 황제에게 하례(賀禮)하는 조공국들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제2차 아편전쟁으로 북경이 점령당한 이후 국왕과 귀국한 사신들의 소견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대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청의 조회에 몇 나라가 참석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³⁵⁾ 청 중심의 국제질서가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조회 참여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⁶⁾ 결국 질서의 파견은 청과 조선의 기존 국제관계를 유지시키는 장치이자, 조공 의례를 통해 동질한 문명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2) 김창수, 2013, 「청의 詔書 반포사신을 통해본 조선의 지위」, 『역사와 현실』 89, 171~172쪽.

33) 임계순, 2000,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494~497쪽.

34) 임계순, 2000, 앞의 책, 501~505쪽.

35) 『承政院日記』 고종 12년(1875) 12월 11일; 같은 자료, 고종 16년(1879) 3월 25일; 같은 자료, 고종 24년(1887) 9월 29일; 같은 자료, 고종 27년(1890) 3월 16일; 같은 자료, 고종 28년(1891) 4월 6일.

36) 안외순, 1996, 「고종초기의 대외인식 변화와 친정-遣淸回還使 召見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0, 566쪽.

진하사 또는 진위사는 청의 경조사(慶弔事)를 위해 파견되었다. 파견 목적을 살펴보면 황태후의 존호(尊號: 표의 ①②③), 존시(尊諡: ④), 탄일(誕日: ⑤), 황제의 친정(親政: ⑥)과 만수(萬壽: ⑦), 황후 책립(冊立: ⑧), 그리고 황태후의 사망(遺詔: ⑨)을 위로하기 위한 사신이 파견되었다. 대전(大典)으로 분류되는 청 황실의 중요 의례에 조선에서는 예외 없이 진하사 또는 진위사를 보내 표문(表文)과 방물(方物)을 올리는 전통적 방식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에서 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 조서가 반포되기 전에 미리 진하사를 출발시켜 행사에 참가하는 관행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진하 외교’라고 명명할 수 있다.³⁷⁾

19세기 후반 모두 세 차례의 ‘진하 외교’가 시행되었다. 첫 번째는 고종 13년(광서2, 1876) 양궁황태후(兩宮皇太后) 즉 자안태후(慈安太后)와 자희태후(慈禧太后, 이하 ‘서태후(西太后)’)의 존호를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해 5월에 출발하였고(①),³⁸⁾ 해당 조서는 7월 4일에 반포되었다. 두 번째는 고종 25년(광서14, 1888)이었다. 당시 진하의 대상은 황후(孝定景皇后, 叶赫那拉) 책립, 서태후가 광서제에게 정권을 돌려주는 귀정(歸政), 그리고 황후 책립에 따른 황태후 존호 가상, 귀정(歸政)에 따른 황태후 존호 가상 등 총 네 건이었다(②). 진하사는 같은 해 11월에 파견되었고³⁹⁾ 위의 네 건에 대한 조서는 이듬해인 고종 26년(광서15, 1889) 4월에야 조선에 도착했다.⁴⁰⁾ 때문에 고종 26년 11월에 출발하는 절사에 조서를 보내 준 것에 감사하다는 사은 항목을 추가했다.⁴¹⁾ 마지막 ‘진하

37) 구범진, 2014, 「조선의 청 황제 성절 축하와 건릉 칠순 ‘진하 외교」, 『한국문화』 68.

38) 『承政院日記』 고종 13년(1876) 5월 16일.

39) 『承政院日記』 고종 25년(1888) 11월 13일.

40) 『承政院日記』 고종 26년(1889) 5월 23일.

외교'는 고종 31년(광서20, 1894) 서태후의 육순(六旬)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존호 가상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이었다(28). 조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하사는 같은 해 6월에 출발했다.⁴²⁾ 그리고 청일전쟁으로 인해 해당 조서는 조선에 도착하지 않았다.

세 차례의 진하는 모두 조선의 자율적 판단 아래 시행되었다. 청 예부에서는 황제 및 황태후에게 진하할 사안이 생길 경우, 논의 과정, 진하 일정, 그리고 조선에서 올려야 하는 표문 양식[表式]에 대한 내용을 자문으로 미리 알렸다. 고종 26년(광서15, 1889)에 시행된 황태후 존호 가상에 대한 진하의 경우, 고종 25년(광서14, 1888) 귀정(歸政) 길일을 정했다는 내용⁴³⁾부터 시작하여 귀정 후 존호를 올리기로 결정한 사안,⁴⁴⁾ 존호 가상 길일,⁴⁵⁾ 황태후 존호 경하(慶賀) 표문 양식에 관한 내용⁴⁶⁾이 차례로 자문을 통해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자문에는 의례 당일에 조선 사신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만 행사에 앞서 미리 알리는 행위 자체가 간접적인 요구일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고종 9년(동치11, 1872) 양궁황태후(兩宮皇太后) 존호 의례에 대한 사신 파견에서도 확인했듯이 조선에서는 의례 당일에 참석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조선에서 결정할 문제로 인식하였다.⁴⁷⁾

고종 26년 진하의 경우 원래 황후 책립만을 목적하였다. 황태후 존호에 대해 전달할 표문 양식은 1월에야 조선에 전달되었기 때문

41) 『承政院日記』 고종 26년(1889) 8월 9일.

42) 『承政院日記』 고종 31년(1894) 6월 10일.

43) 『承政院日記』 고종 25년(1888) 8월 8일.

44) 『承政院日記』 고종 25년(1888) 8월 27일.

45) 『承政院日記』 고종 25년(1888) 10월 9일.

46) 『承政院日記』 고종 25년(1888) 12월 21일.

47) 『承政院日記』 고종 9년(1872) 4월 30일.

에 애초의 황태후 존호에 대한 진하는 빠져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황태후 존호 가상 표문양식을 자문으로 전달받자마자 방물을 추가로 발송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진하 표문을 추가하여 북경에 도착한 이순익(李淳翼) 일행에게 전달하였다.⁴⁸⁾ 진하사 일행은 황후 책립과 황태후 존호 가상 의례에 모두 참석해야 했고, 이로 인해 일반 사행보다 두 배 가까운 110일이나 북경에 머무른 후 6월에야 비로소 서울로 돌아왔다.⁴⁹⁾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세기 후반 조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진하 외교’는 모두 황태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유정변(辛酉政變)을 계기로 서태후는 청 조정을 움직이는 핵심 권력자였고, 1880년대 동태후의 죽음과 공친왕(恭親王)의 은거 이후에는 사실상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였다.⁵⁰⁾ 청 예부에서는 서태후를 대상으로 하는 존호 의례를 시행할 때마다 의례 일정과 표문 양식을 조선에 미리 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례 당일 참석을 요청했고, 조선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서태후, 나아가 청조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활용하였다.

고종 31년(광서20, 1894) 황태후 존호 및 육순 축하 의례의 경우, 일본군이 서울에 진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사신 파견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존호 가상 행사는 8월에, 육순 축하 행사는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북경에 머무는 기간만 약 100일 정

48) 『承政院日記』 고종 26년(1889) 1월 8일, “閔致憲 以議政府言啓曰 皇太后歸政慶賀表式禮部咨文 纔已出來矣 方物一起 照例磨鍊 進賀表修正入送事 分付該曹該院 何如 傳曰 允.”

49) 『承政院日記』 고종 26년(1889) 6월 4일, “上曰 溯考乾隆時已例 則以七旬稱慶 入送賀使 而其前年先送賀使矣 今此賀使 亦當趁八月入送 則必謂以厚意矣 正魯曰 然矣 上曰 然則六月初 發送爲好 方物亦宜準備矣”

50) 김형중, 2010, 「近代中國의 皇帝權力 : 光緒帝와 西太后」, 『역사학보』 208.

도로 예상되었다.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행사 당일에 참여하기 위해 6월 초에 사신을 파견하도록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⁵¹⁾

고종: 건륭(乾隆) 때의 전례(前例)를 상고해 보면, 칠순을 경하하는 의식에 진하사를 들여보냈고 그 전년에는 미리 보내었다. 이번 진하사도 8월에 맞추어 들여보낸다면 필시 후의로 여길 것이다.

이정로: 그렇습니다.

고종: 그렇다면 6월 초에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 방물 또한 마땅히 준비하도록 하라.

고종은 명확히 건륭 칠순 행사를 거론하였는데, 건륭 칠순은 바로 정조의 ‘진하 외교’가 시작된 행사였다. 더하여 행사 당일에 맞춰 도착한다면 청측에서 ‘후의’로 여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진하 외교’가 갖는 정치적 효과를 인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당시 사신들은 홍제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본군의 검문을 받았는데, 왕명으로 평안도에 간다며 신분을 숨기기까지 하였다.⁵²⁾ 동학농민군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같은 해 5월 장성(長城)전투와 전주성 함락을 계기로 원세개(遠世凱)에게 청군의 출병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⁵³⁾ 이는 의례적인 성격을 갖는 사신 파견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갈등 속에서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활될 수 있었다.

절사(節使)와 진하사(進賀使) 외에 조선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는

51) 『承政院日記』 고종 31년(1894) 4월 13일.

52) 임준철, 2008, 「대청사행의 종결과 마지막 연행록」, 『민족문화연구』 49, 146~147쪽.

53) 권혁수, 2000, 앞의 책, 281~282쪽.

진주(陳奏)도 사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항시기 조선의 진주는 고종 19년(광서8, 1882)에서 고종 22년(광서11, 1885)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사안별로 살펴보면 고종 19년의 대원군 귀국 요청(⑩⑪⑮), 고종 21년(광서10, 1884) 오장경(吳長慶)의 사당 건립(⑬), 그리고 고종 22년 군대주둔 연기 요청(⑮)이 진주의 대상이 되었다. 청은 군대를 파견해 임오군란을 진압한 이후 난의 배후 세력으로 대원군을 지목하고 정국 논의를 핑계로 천진으로 납치하 다시피 데리고 간 후 보정부(保定府)에 감금하였다.⁵⁴⁾ 이로 인해 대원군의 귀국을 요청하는 정식 사신이 두 차례 파견되었다. 오장경은 임오군란의 진압을 지휘한 총책임자로 조선에서 주둔군으로서 2년간 머물다 고종 21년(광서10, 1884) 4월 요동으로 철수한 후 같은 해 윤5월 금주(金州)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청군을 통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당시 조선 조정은 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호의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오장경 사당 건립을 청에 신청했다.⁵⁵⁾ 마지막 진주사는 갑신정변 이후 청 군대의 지속적인 조선 주둔을 요청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청은 갑신정변 사후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천진조약을 맺었고 그 내용 중에는 양국 군대의 철수가 포함되었다. 일본에서 고종 22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군대를 철수하자 청조 역시 조약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철수를 시작하였다.⁵⁶⁾ 불안함을 느낀 고종은 일부 군영이라도 주둔할 것을 사신을 통해 요청하였고, 광서제는 이홍장으로 하여금 사태가 생길 경우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⁵⁷⁾

해당 사안들은 모두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54) 권석봉, 1981a, 「淸廷에 있어서의 大院君과 그의 還國(상)」, 『동방학지』 28.

55) 박현규, 2011, 「서울 吳武壯公祠의 역사와 현황 고찰」, 『중국사연구』 74, 212~215쪽.

56) 권혁수, 2000, 앞의 책, 159~161쪽.

57)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2년(1885).

것들로 조선·청 관계가 질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에서는 왕실의 안정과 정권의 유지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삼사신을 수반으로 하는 정식 사신단을 파견함으로써 조선의 필요 사안을 관철하고자 했다. 사신, 그리고 사신이 지참하는 표문 및 방물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파견 그 자체 및 파견 과정에서 나타난 사신들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자.

고종 19년(광서8, 1882) 임오군란의 발생으로 고종 및 민씨 척족세력의 권력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청조에서는 당시 천진에 있던 김윤식과 어윤중의 요청을 통해 오장경 등을 보내 반란을 진압한 후 대원군을 그 배후로 판단, 면담을 구실삼아 천진으로 압송하였다.⁵⁸⁾ 그러나 고종에게 임오군란의 진압과 대원군의 감금은 동일한 사항이 아니었다. 고종은 왕실의 위상에서나 자식된 도리로서 대원군의 송환을 강력히 추진하여 고종 19년(광서8, 1882)에 시작해 총 다섯 차례 환국을 요청하였으나, 고종 22년(광서11, 1885) 진주사(正使 閔種默)의 파견 이후에야 비로소 귀국이 이루어졌다. 대원군의 귀국에 결정적인 요인은 이홍장의 태도 변화였다. 갑신정변 이후 이홍장은 고종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 민씨 세력의 러시아에 대한 접근 등을 견제하고자 대원군의 귀국을 결정하였다.⁵⁹⁾ 이홍장의 대조선 정책 방향에 대해 총리아문에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이홍장의 의도가 관철되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몇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진주사 조영하(趙寧夏) 일행이 북경에 도착한 후 주문(奏文)을 올렸을 때 광서제는 이미 대원군을 감금한 정도로 조치한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면서 “다시는 번거롭게 요청하지 말 것[嗣

58) 권석봉, 1981b, 「淸廷에 있어서의 大院君과 그의 還國(하)」, 『동방학지』 29.

59) 권석봉, 1981b, 앞의 논문.

後不得再行瀆請]”을 명령하였다.⁶⁰⁾ 그런데 조선에서는 같은 해 8월 황력재자관 이용준을 파견해 대원군 귀국 요청 자문을 또다시 전달했다. 예부에서는 조선의 자문을 올리지 않으면 황제의 귀를 막는 행위가 된다면 다시 상주하였고 황제는 군기처를 통해 “다시는 청하지 말라”는 단호한 상유를 내렸다.⁶¹⁾

세 번째 시도는 행호군 이재덕(李載德)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재덕은 이홍장과의 면담에서 대원군의 방환요청 자문을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홍장이 거절하면서 조선의 요청은 북경에 전달되지 않았다.⁶²⁾ 네 번째 시도는 진하사은겸진주세폐사(進賀謝恩兼陳奏歲幣使) 심이택(沈履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심이택은 정식 자문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예부에 정문(呈文)을 올렸는데 예부에서는 앞서 상유에 근거해 각하하였다.⁶³⁾

대원군 환국 요청 과정에서 보여주는 조선 조정과 사신의 태도를 살펴보자. 첫 번째 시도에서 광서제는 명확히 다시는 요청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재자관 이용준으로 하여금 다시 자문을 올리도록 하였고, 광서제는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다. 세 번째 시도는 이홍장이 천진에서 막았지만 조선은 네 번째의 시도에서 이홍장을 거치지 않고 절사를 통해 바로 예부에 정문을 올렸다.⁶⁴⁾ 이홍장은 조선의 교섭 대상을 자신으로 한정시키려고 했지만 북경에서 총리아문 및 예부에 직주(直奏)할 수 있는 사신의 존재는 그러한 의도를 무산시켰다. 장정 체결 이후에도 조선 사신들에게는 황제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외교 안건을 전

60) 권석봉, 1981b, 앞의 논문, 116쪽; 『關係史料』, #573, 953a.

61) 권석봉, 1981b, 앞의 논문, 116~117쪽; 『關係史料』, #616, 1016a.

62) 권석봉, 1981b, 앞의 논문, 120~122쪽.

63) 권석봉, 1981b, 앞의 논문, 122~123쪽; 『關係史料』, #687, 1120a

64) 권석봉, 1981b, 앞의 논문, 123쪽.

달할 수 있는 권리와 이홍장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외교 통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전통적 사행은 재자 및 재주관, 그리고 고종 21년(광서10, 1884) 이후에 설립되는 주진대원(駐津大員, 이후 ‘주진독리통상사무(駐津督理通商事務)’)과의 공조 체제를 유지하였다. 앞서 대원군 환국 요청에서 나타나듯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진주사(陳奏使)와 재자관이 연이어 외교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이 존재하였다. 정식 사절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재자관 또는 재주관이 일부 분담을 하는 체계였다. 고종 20년(광서9, 1883)에는 재주관 변원규(卞元圭)를 통해 오장경의 군대를 계속 주둔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고, 임오군란 시기에 군대를 파병해줘서 감사하다는 사은을 같은 해 11월 질사에 겸행함으로써 주둔 요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⁶⁵⁾ 갑신정변 직후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종 22년(광서11, 1885) 1월 재주관을 통해 진압을 주도한 오조유(吳兆有) 등을 포상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한 후, 같은 해 6월에 진주사를 파견해 다시금 주둔군 유지와 포상을 요청하는 등⁶⁶⁾ 진주사와 재자관을 통해 교차로 요청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사신이 재자관의 후속 처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종 23년(광서12, 1886) 제2차 조·러밀약사건으로 인해 원세계가 고종 폐위를 건의할 만큼 양국의 관계는 경직되었다. 이에 고종은 당시 서리독판교섭통상사무(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를 맡고 있던 서상우(徐相雨)를 급히 원세계에게 보내 이를 적극 해명하고, 이응준을 파견하여 해명 자문을 예부·총리아문·북양대신아문에게 각각 전달했다.⁶⁷⁾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앞서 밀약사건의 처리를 담당했던

65)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0년(1883).

66)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2년(1885); 『承政院日記』 고종 22년(1885) 6월 11일.

67)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3년(1886); 권혁수, 앞의 책, 2000, 191쪽.

서상우를 사은겸삼절연공(謝恩兼三節年貢) 정사에 임명하여 북경으로 파견하였다.⁶⁸⁾ 고종 24년(광서13, 1887)에는 서양에 전권 사신 파견하겠다는 요청을 재주관 윤규섭(尹奎燮)을 통해 발송한 후 광서제의 허락을 받자, 이에 대한 감사[謝恩]를 같은 해 삼절연공에 포함하여 표문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⁶⁹⁾ 거문도 사건과 같이 예부의 관할 범위 밖의 사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은 통리아문이 주도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회답은 절사에 표문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⁷⁰⁾ 고종 25년(광서14, 1888) 홍삼에 대한 이금세(鰲金稅) 면제 요청과 이에 대한 사은도 같은 방식을 이용하였다.⁷¹⁾

정식 사신단은 재자관뿐 아니라 주진독리(駐津督理)와도 공조를 취하였다. 사신들은 북경으로 이동하는 동안 천진 주재 조선 관원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고종 24년(광서13, 1887) 광서제의 친정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진하행 정사 이승오(李承五)는 북경에서 자신의 반당(伴尙) 이세직(李世植)이 다리에 종기가 생겨 점점 악화되자, 천진의 주진독리에게 연락을 취해 천진에서 배를 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손을 써줬다.⁷²⁾ 같은 해 북경에 도착한 조병세(趙秉世)는 주진 종사관(駐津從事官) 성기운(成崎運)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⁷³⁾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이 나

68) 『承政院日記』 고종 23년(1886) 11월 8일.

69)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4년(1887); 『承政院日記』 고종 24년(1887) 8월 11일.

70)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4년(1887); 『承政院日記』 고종 25년(1888) 4월 3일.

71)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5년(1888).

72) 李承五, 『燕槎日記』 고종 24년(1887) 7월 18일.

73) 趙秉世, 『丁戌燕行日記』 고종 24년(1887) 1월 17일; 같은 자료, 고종 24년(1887) 1월 23일.

와 있지 않아 어떠한 사안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승오 및 조병세 모두 북경에 도착하고 나서 주진독리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신과 주진독리의 긴밀한 공조체계는 특정 상황에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청일전쟁 발발 직후에 출발한 마지막 사신 일행은 청일전쟁으로 인해 북경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조선의 전쟁 상황을 탐문했다. 여기에서도 당시 천진의 한영복(韓泳福)은 사신단에게 서신을 보내 전쟁 상황을 알려주기도 했다.⁷⁴⁾ 이후 음력 11월까지 북경에 머물게 되자 동지 하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이순익(李淳翼) 일행은 황태후의 생일을 진하(進賀)하기 위해 파견된 사신으로, 동지 하례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동지를 축하하는 국왕 명의를 표문 및 방물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청에서는 의례적 권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표문과 방물 없이 참석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추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조선 사신은 선래군관(先來軍官)을 차출하여 조선으로 보냈는데, 전쟁으로 인해 육로가 막혔기 때문에 천진을 통해 귀국 조치시켰다.⁷⁵⁾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주진독리가 담당하였다.

사신의 적극적인 활동은 청의 조 대비(趙大妃: 神貞王后)에 대한 유제사 파견을 저지하는 일이었다.⁷⁶⁾ 고종 27년(광서16, 1890) 6월, 신정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조선과 청의 관계 속에서 왕비가 사망했을 경우 청은 250여 년간 예외 없이 사신을 파견해 제사를 내려주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청 사신의 파견을 원치 않았고 이에 고부(告訃) 정사로 홍종영(洪鍾永)을 임명했지만 출발을 서두

74) 孙成旭, 2014, 「清代朝鮮最后赴京使团考」, 『历史档案』, 2014-4, 92쪽.

75) 孙成旭, 2014, 앞의 논문, 93쪽.

76) 당시 청의 의도와 실행과정, 열강의 평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유바다, 2017, 앞의 논문, 290~306쪽.

르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이홍장과 원세개의 압박으로 7월 서울을 출발하였다.⁷⁷⁾

그런데 홍종영 일행은 청 조문 사절의 파견을 막기 위해 비공식 교섭을 시도했고,⁷⁸⁾ 고종 27년 8월 21일에는 청 사신 파견 중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예부에 올렸다.⁷⁹⁾ 이에 광서제는 첫째, 조제(弔祭)를 위한 사신은 예전에 실려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 둘째, 조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 사신들은 천진을 거쳐 해로로 이동하도록 하라. 셋째, 옛 제도와 관련된 절차들은 각별히 준수하고 생략하지 않도록 하라는 상유(上諭)를 내렸다. 결국 조선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해서 접대비용은 경감시키되 의례적 위상을 명확히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홍종영은 해당 상유를 8월 25일에 초록(抄錄)했고,⁸⁰⁾ 8월 30일 선대군관을 천진으로 출발시켰다.⁸¹⁾

이 사실은 바로 주진독리에게 전달되었다. 서리를 맡고 있던 김덕영(金愷永)은 이홍장에게 공문을 보내 청 사신의 도착 장소를 인천이 아닌 마산포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⁸²⁾ 그런데 김덕영은 해당 문서에서 인천에서 한성까지는 80리이며 마산포에서 한성까지는 100리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의 거리 감각을 반영하기 위해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리수로 계산해도 마산포에서 서울까지는 150리에 가깝다. 따라서 김덕영의 보고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에서의 접대예를 최대한 피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⁸³⁾ 결국 이

77) 권혁수, 2000, 앞의 책, 219쪽.

78) 권혁수, 2000, 앞의 책, 219~220쪽.

79) 洪鍾永, 『燕行錄』 고종 27년(1890) 8월 21일.

80) 洪鍾永, 위의 자료, 고종 27년(1890) 8월 25일.

81) 洪鍾永, 위의 자료, 고종 27년(1890) 8월 30일.

82) 『李文忠公全集』, 電稿 2, 「寄譯署交續崇兩欽使」, 294~295쪽.

리한 기도는 원세개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러나 조공책봉관계 속에서 운영되었던 전통적 사신과 상주외교 관서의 주진독리가 청과의 외교 문제에서 어떻게 공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재자·재주관의 파견과 활동

재자행이 갖는 비용 및 시간의 편의성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먼저 재자(재주)관의 파견의 빈도를 통해 양적 변화상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여기서에는 특정 임무를 위해 단독 파견된 재자행, 즉 별재자행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검토의 편의를 위해 주문을 전달하는 재주행(齎奏行)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는 왕대별 재자관의 파견 빈도이며 역서 수령을 위해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표-3> 19세기 재자행·재주행의 단독파견 빈도

왕대	재위기간	전체 파견빈도	연간 파견빈도
순조	순조즉위(1800) 7월 ~순조34년(1834) 11월	22	0.64
헌종	헌종즉위(1834) 11월 ~헌종15년(1849) 6월	4	0.26
철종	철종즉위(1849) 6월 ~철종14년(1863) 12월	5	0.35
고종	고종즉위(1863) 12월 ~고종31년(1894) 6월	20	0.64
개항 이후	1876~1894	14	0.77

파견 빈도는 중국 표류민 송환, 탐문, 보고, 고부(告訃) 등을 포함한 전체 빈도이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순조 연간 재자관의 파견 빈도는 연간 0.64회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헌종과 철종

83) 구선희, 1999, 앞의 책, 171~172쪽.

연간에는 사실상 별재자행은 거의 사라졌다가 고종대 비로소 다시 늘어났다. 고종 연간 별재자행은 연간 0.64회이며 특히 개항 이후에는 연간 0.77회로 순조대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파견 목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도록 하자.

<표-4> 1860-1890년대 별재자·재주행⁸⁴⁾

순번	파견시기	담당	파견목적
1	고종3년(1866) 5월	李用俊	표류민 송환
2	고종3년(1866) 7월	吳慶錫	서민호사건 보고
3	고종5년(1868)윤4월	李建昇	세난도어 내항 및 오페르트 도굴사건 보고(재주)
4	고종5년(1868)윤4월	吳慶錫	서양인과 결속한 조선인의 중국 도피
5	고종8년(1871) 5월	李應浚	신미양요 보고
6	고종11년(1874) 8월	李容肅	일본의 조선 침공설 전달 감사 서양 각국에게 일본과 결탁하지 말 것을 전달 요청
7	고종13년(1876) 7월	李容肅	조일수호조약 보고
8	고종17년(1880) 5월	卞元圭	武備학습 요청 ⁸⁵⁾
9	고종18년(1881) 4월	李應浚	天津으로 가는 海路확인 요청
10	고종18년(1882) 4월	李應浚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보고
11	고종19년(1882) 8월	金載信	임오군란 진압 사은행 통보, 길림의 조선민민 쇄환 요청 ⁸⁶⁾
12	고종20년(1883) 1월	卞元圭	吳長慶의 재파견 요청(재주) ⁸⁷⁾
13	고종21년(1884) 5월	李用俊	청군 주둔에 감사(재주) ⁸⁸⁾
14	고종21년(1884) 12월	李應浚	갑신정변 진압경과 보고(재주) ⁸⁹⁾
15	고종22(년1885) 1월	李鶴圭	갑신정변을 진압한 吳兆有 등에 대한 포상 요청(재주) ⁹⁰⁾
16	고종22(년1885) 1월	李應浚	토문강 공동조사 요청 ⁹¹⁾
17	고종22(년1885) 9월	金嘉鎭	군대파병 요청(재주) ⁹²⁾
18	고종23년(1886) 8월	李應浚 崔學泳	조러밀약 해명 ⁹³⁾
19	고종24년(1887) 8월	尹奎燮	해외 사신파견 허락 요청(재주) ⁹⁴⁾
20	고종25년(1888) 8월	李應浚	홍삼 釐金稅 면제 요청

*(재주)는 주문을 지참한 경우

84) 사신의 출발 목적과 시기에 관해서 고종 18년까지는 『同文彙考』 「使行錄」을, 고종 19년까지는 『通文館志』 紀年續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고종 연간 전체 20건의 별재자행 중에서 파견 내용을 몇 가지로 묶어보면, 고종 초기부터 서양과의 접촉 및 갈등 사안은 재자관이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②③④⑤⑥). 1880년대 초 천진에서의 무비(武備) 및 자강(自強) 요청 사안(⑧⑨), 임오군란 이후 청군의 주둔 관련(⑪⑫⑬), 갑신정변 관련 경과보고 및 군대 주둔 요청(⑭⑮⑰), 제2차 조·러밀약설에 대한 해명(⑱), 해외 사신 파견 허락 요

그 이후 시기는 『承政院日記』 및 『고문서해제X』(국립중앙도서관, 2013)에서 수록된 자문에 근거하였다. 또한 고종 3년부터 고종 18년까지는 『同文彙考』 「使行錄」 및 『通文館志』 紀年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고종 16년(1879) 李容肅은 武備학습과 관련해서 李裕元의 서신을 游智開를 통해 李鴻章에게 전달했지만 공식적인 자문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關係史料』 #326, 395b-396b).

- 85) 당시 변원규의 직명에 대해 예부의 자문에서는 재주관으로 표기하였으나, 『동문회고』에는 재자관으로 기록했고, 수록된 문서 또한 자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문서번호7-14, 141쪽; 『同文彙考』 原編續 軍務, 4a~5a.
- 86) 『承政院日記』 고종 19년(1882) 8월 11일.
- 87) 당시 변원규는 병으로 북경에 도착하지 못해 관련 문서를 직례총독 張樹聲이 대신 굳기처로 전달하여 광서제의 유지를 받았다.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0년(1883);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문서번호10-12, 169쪽; 『出來咨文』 39b~41a(쪽수는 규장각본 기준).
- 88) 『日省錄』 고종 21년(1884) 5월 3일;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1년(1884).
- 89) 『承政院日記』 고종 21년(1884) 12월 14일;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1년(1884).
- 90) 『承政院日記』 고종 22년(1885) 1월 14일;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2년(1885).
- 91)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문서번호12-1, 220쪽.
- 92) 『承政院日記』 고종 22년(1885) 9월 13일;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2년(1885).
- 93) 『承政院日記』 고종 25년(1888) 8월 18일.
- 94) 『承政院日記』 고종 24년(1887) 8월 11일.

청(⑱), 이외에 사행단이 지참하는 홍삼에 대한 세금 면제(⑳) 및 국경 확정과 관련된 사안(㉑)도 재자관이 담당하였다.

내용을 보면 앞서 정식 사신의 진주(陳奏) 사안과 마찬가지로 개항기 조선·청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재자관을 파견하였다. 다만 진주사의 경우 대원군 귀국 및 청군 주둔 요청 등 왕실의 안정과 관계된 사안만 나타났던 것에 비해, 재자관은 서양 각국과의 조약 체결 및 진행사항, 조·러밀약 문제, 해외 사신 파견 등 개항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문제를 담당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개항기 재자관 파견 빈도가 이전 시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은 바로 조선·청 관계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조선은 양국 관계의 변화에 대해 사신이라는 전통적 방식을 통해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종 연간 단독 임무를 띠고 파견한 경우는 표류민 송환을 제외하고 모두 19회이다. 구체적으로 이응준(李應浚) 7회, 이용숙(李容肅) 2회, 오경석(吳慶錫) 2회, 변원규(卞元圭) 2회, 김재신(金載信), 이용준(李用俊), 이학규(李鶴圭), 김가진(金嘉鎭), 윤규섭(尹奎燮), 이건승(李建昇), 이 각각 1회씩 파견되었다.⁹⁵⁾ 전통시대 조선과 청의 교섭활동은 상당부분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틀 속에서 제한을 받았다. 1860년대 연행을 다녀 온 박규수가 조선은 여전히 ‘인신무외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토로한 일이나,⁹⁶⁾ 고종 2년(동치4, 1865) 정사 이흥민(李興敏)이 예부상서 만청려(萬靑藜)에게 프랑스와의 문제를 개인 편지로 전했다가 조선·청 양국 모두에서 문제로 삼았던 일은 또 다른 근거가 될 것이다.⁹⁷⁾

95) 이중 金嘉鎭, 李建昇, 尹奎燮은 역관이 아닌 6품 이하의 정식관원이었다. 齎奏官의 경우 종종 역관 이외에 정규 관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지만 신분에 따라 파견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96) 김명호, 2008,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439~441쪽.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선에 필요한 외교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교섭은 필요하였다. 사신은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교섭의 전면에서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역관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역관에게는 교섭에 대한 재량권이 일정 부분 허용되었고 이러한 관성은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져 왔다. 근대적 성격의 사안에 대해서도 역관들은 단순한 외교 문서의 전달자가 아니라 교섭을 수행하였다.

고종 10년(동치12, 1873) 정사 정건조(鄭健朝)는 청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예부상서 만청려, 형부 주사 장세준(張世準) 등을 만나 당금 조선의 위기를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자 했다. 이 만남의 자리에는 해당 사행의 수행원이었던 강위(姜璋)도 동행했는데, 당시 나눈 필담은 「북유담초(北游談草)」라는 이름으로 『강위전집(姜璋全集)』에 수록되었다. 필담 자리에서 만청려는 흥선대원군의 척사(斥邪)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를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장세준의 경우 양무론(洋務論)을 견지했는데, 무력으로 서양과 대결했을 때 승산이 없다며 주전론(主戰論)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현재 청은 서양과 통교 후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양의 의도는 통상뿐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결국 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자강을 전제로 삼아 운선(輪船)을 만들고 서양의 언어를 배우며 젊은이들을 유학 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건조는 만청려와 두 번의 만남에 그친 것과 달리 장세준과는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양무론에 관심을 기울였다.⁹⁸⁾

한편 강위는 해당 필담의 주체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97)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2년(1865).

98) 당시 鄭健朝와 萬靑藜 등이 나눈 대화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노대환, 1997, 「1860-70년대 전반 조선 지식인의 대외인식과 양무 이해」, 『한국문화』 20, 337~342쪽.

듬해(고종11) 여행에서 보인 태도와 국제인식의 변화를 볼 때 당시 강위는 단순한 통역자 혹은 관찰자로서의 역할만 담당했던 것은 아니었다. 2차 여행 때 강위는 중국 지식인들과의 필담을 준비하여 질문할 내용들을 「담초설문(談草說問)」으로 작성한 후 필담 장소에서 적극 활용하였다. 장세준을 비롯하여 서부(徐鄙)·황옥(黃鈺)과의 대화를 통해서 동아시아 및 서양 제국(諸國)과의 다중외교를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했다.⁹⁹⁾

강위가 중인 신분으로서 경제론적 사고를 가진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면 실무적 사안에서 역관의 역할을 극대화한 인물들도 있었다. 우선 변원규(卞元圭)를 거론할 수 있다.¹⁰⁰⁾ 고종 17년(광서6, 1880) 조선에서는 무비(武備)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는 자문을 변원규를 통해 청에 전달했다.¹⁰¹⁾ 예부에서는 통관을 변원규와 함께 천진으로 보내 이홍장에게 자문하라는 황지(皇旨)를 전달하였다.¹⁰²⁾ 이홍장과 변원규는 9월 22일에 만나 조선의 상황에 대해 필담을 나누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원규는 통상과 관련 동래(東萊)를 개항했음에도 아직 관세를 받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통상 세금의 규정과 관행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였다.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우려와 대책, 그리고 유구를 병합한 일본에 대한 대응 문제를 둘러싸고 이홍장과 상세히 논

99) 「北遊談艸」의 내용과 그 이후 강위의 대외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이현주, 『姜瑋의 開化思想 研究』, 선인, 2018.

100) 변원규에 관한 연구는 유정, 2013, 「조선 역관 6인의 시선집 『海客詩抄』에 대한 고찰 -3종 필사본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 ; 千金梅, 2013, 「壬午軍亂時期 韓中 文士들의 文化交流」, 『한국학논집』 50 ; 김양수, 1999, 「朝鮮開港前後 中人의 政治外交-譯官 卞元圭 등의 東北亞 및 美國과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12 참조.

101) 고종 17년 武備강구 요청 과정은 김양수, 1999, 앞의 논문, 335~337쪽; 구선희, 1999, 앞의 책, 37~48쪽.

102) 『通文館志』, 紀年續, 고종 17년(1880).

의하고 여러 가지 조언과 정보를 확보하였다.¹⁰³⁾ 외교에 대한 변원규의 지식수준은 이홍장과 깊은 대화를 나눌 정도로 높았다.

고종 17년(광서6, 1880) 진하검삼절연공 사신 일행에 역관으로 이용숙이 파견되었다. 당시 이용숙은 천진으로 가서 이홍장을 만나 조선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다. 당시 이용숙이 제출한 ‘청시절략(請示節略)’은 『조선책략(朝鮮策略)』 전래 이후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구상한 개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⁰⁴⁾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청시절략’을 전달했을 때의 이용숙과 이홍장의 대화이다. 이홍장은 이용숙으로부터 ‘청시절략’과 이최응(李最應)의 주본(奏本)을 받고서 진해관도(津海關道) 정조여(鄭藻如)로 하여금 논의하게 한 후 이용숙과 필담을 나누었다.¹⁰⁵⁾ 필담 내용에는 김홍집(金弘集) 이후 조선 사신의 일본 파견 유무, 서양 각국과의 통상에 대한 조선 조정의 예상 반응, 하나부사에 대한 조선의 대우, 지난번에 가져간 신식무기의 시험 결과와 감상, 유구의 사태에 대한 견해, 조선의 세금 수입 등 내정과 외정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이용숙은 막힘없이 대답해주었다.¹⁰⁶⁾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숙도 변원규와 마찬가지로 통역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과 청, 그리고 일본과의 국제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동시에 조선의 정치 및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바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¹⁰⁷⁾ 사실상 외교주체로서 전혀 손색이

103) 『關係史料』 #341 附件, 432a~436b.

104) 구선희, 1999, 앞의 책, 27~37쪽.

105) 『關係史料』 #355, 483a.

106) 『關係史料』 #353 附件, 467a~470a.

107) 이외에도 동아시아의 정세와 중국의 개혁방향과 관계된 「公報抄略」을 편집한 金景遂 역시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金景遂가 姜璋가 주도한 六橋詩社에 일원이었다는 점은 역관의 역할 상승과 연결 지어 볼 때 매

없었다.¹⁰⁸⁾

역관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안은 고종 26년(광서15, 1889) 1월에 불거진 재자관 이응준(李應浚) 처벌 문제이다. 같은 해 2월 원세개(遠世凱)는 이흥장에게 전보를 보내 이응준이 예부 관원에게 2만 냥을 뇌물로 써서 청 사신 파견을 면제 받았다고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그리고 2만 냥의 자금은 고종이 이응준에게 속임을 당해 지급했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원세개는 이응준뿐 아니라 족형(族兄) 이응상(李應相)까지 조사하였지만 결국 더 이상의 혐의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다만 원세개는 만일 조선 국왕이 개입되었다면 조선 조정에서 어차피 숨기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밝히기 어렵겠지만, 예부를 통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을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였다.¹⁰⁹⁾

원세개가 요청한 예부의 자문은 같은 해 3월 경에 조선에 도착했다.¹¹⁰⁾ 원세개는 밝히지 못했지만 이응준과 예부 관원의 접촉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에서는 조정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멋대로 벌인 이응준의 처벌을 요구했고 고종도 승인하였기 때문이다.¹¹¹⁾ 조선에서 문제 삼은 이응준의 활동은 앞서 원세개가 언급한 황태후 존호 가상 조서를 순부(順付) 받은 일일 것이다.

우 흥미로운 현상이다(백옥경, 2012, 「개항기 역관 김경수의 대외인식-‘공보초략’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1; 송만오, 1999,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중인층의 활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8) 당시 조선이 추진했던 武備講究에 대한 李鴻章의 태도는 권혁수, 2000, 『19세기말 한중 관계사 연구』, 백산자료원, 52~66쪽.

109) 권혁수, 2000, 앞의 책, 218~219쪽 ; 『李文忠公全集』, 電稿2, 「寄譯書」, 35쪽 ; 같은 자료, 「寄朝鮮袁道」, 39쪽 ; 같은 자료, 「袁道來電」, 39~40쪽.

110) 『承政院日記』 고종 26년(1889) 3월 3일.

111) 『承政院日記』 고종 26년(1889) 6월 4일; 같은 자료, 6월 16일; 같은 자료, 6월 19일.

18세기 후반까지 거의 대부분의 조서는 청 사신을 통해 반포되었지만 19세기에 들어서서 황제의 사망과 등극 조서에 대해서만 사신을 파견하였다.¹¹²⁾ 그렇지만 예부 관원들은 조서 순부의 대가로 은 1,000~3,000냥 정도의 대가를 요구했고 이러한 관행은 광서 초까지 확인된다.¹¹³⁾ 고종 26년 1월과 2월에는 황후 책립 및 이와 관련하여 황태후에 대한 존호(尊號) 가상이 이루어졌고 각각의 조서가 반포되었다. 당시 북경에 머물고 있었던 이응준은 기존의 관행대로 조서를 순부받기 위해 예부 관원과 일정하게 접촉했고, 원세개는 바로 이점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통해 1880년대 말의 시점에조차 재자관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교섭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¹⁴⁾

개항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재자관은 신속히 파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고 있었다. 우선은 규모와 비용 면에서 재자관의 파견은 정식 사절에 비해 훨씬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조선과 청 양국의 관계가 안정됨에 따라 조선에서는 왕실과 관련되지 않은 현안에 대해 정식 사절이 아닌 재자관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재자관의 업무가 확대되어 가는

112) 김창수, 2013, 앞의 논문.

113) 张存武, 1976, 「朝鮮對清外交의 秘密經費研究」,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5, 434쪽.

114) 해당 사건은 손성욱의 논문에서 자세히 분석되었다(2022, 「19세기 지속된 전통적 조·청 관계의 의미」, 『중국근현대사연구』 93, 11~14쪽). 손성욱은 황태후의 휘호 가상은 조선에서 별사(別使)를 파견할 사항이 아니기에 원세개가 조선을 압박하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원세개의 행위보다 문제가 된 이응준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당시 청이 황태후(서태후)의 존호 가상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조선 또한 이에 호응하며 행사 이전에 방물을 지참하여 발송하였으며, 아울러 이듬해에는 해당 조서를 순부해주어서 감사하다는 표문을 전달하였다(『承政院日記』 고종 26년(1889), 8월 9일). 따라서 이응준과 예부 관원의 접촉을 이전부터 지속된 관행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추세 속에서 새로운 국제관계가 시작되었고, 재자관은 새롭게 등장한 외교업무를 전담하면서 변화의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19세기 후반 재자관의 활동에는 조공책봉관계의 관성과 변용이 모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19세기 후반 조선은 일본 및 서양 각국과의 조약, ‘무역장정’ 등을 통해 조선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더하여 1880년대부터 조선과 청 사이에서 임오군란, 흥선대원군 연금, 조러밀약설 등 다양한 정치적 현안들이 발생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외교적 사안들에 대해 주권, 외교관의 파견 등 근대적인 시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조선과 청은 2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사신(使臣)을 통해 양국 관계를 유지해온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양한 외교현안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에서는 전통적 방식의 사신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였다. 고위 관원으로 구성된 사신과 역관을 책임자로 하는 재자관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들은 의례적 위상과 사행인원의 규모, 이동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각각의 방식으로 외교적 역할을 담당했다.

사신은 북경의 청 관원을 대상으로, 또는 천진에 주재하는 주진대원(駐津大員)과의 공조를 통해 교섭을 벌였다. 또한 동일한 사안을 대상으로 재자관과 번갈아 교섭을 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였다. 19세기부터 역할이 증대된 재자관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재자관들은 통상, 무역 등의 새로운 외교 사안을 담당하였고 이들의 정치적·학문적 능력은 북양대신(北洋大臣)과 직접 면담할 정도로 당시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사신의 파견은 조선·청 관계의 전통적 관행이 19세기 후반까지도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더하여 청은 무역장정을 통해 조선의 외무(外務)에 해당하는 사안들은 북양대신이 전담하도록 했지만, 북경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사신의 존재로 인해 청이 구상한 조선의 국제관계는 균열의 지점이 존재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사신이라는 전통적 외교의 주체가, 19세기 후반 새로운 국제질서가 작동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드러냈다. 이는 근대이행기 전통의 요소가 지속·변용되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필자의 역량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섭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본 논문이 19세기 후반 조선·청 관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투고일: 2022.11.13, 심사개시일: 2022.11.15, 게재확정일: 2022.12.09.]

【참고문헌】

- 『淸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光緒) 『大清會典事例』 (續修四庫全書 編纂委員會 編, 『續修四庫全書』 80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2002)
『李文忠公全集』 (近代中國史料叢刊續編 17)
『고문서해제 X』 (국립중앙도서관, 2013)
『同文集考』 (국사편찬위원회, 1978 및 동북아역사넷).
『備邊司謄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承政院日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日省錄』 (규장각한국학연구소 및 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
『藏書閣所藏 古文書大觀』 3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出來咨文』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經古327.51052-J255)
『通文館志』 上·下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및 동방미디어)
임기중 편, 『增補燕行錄叢刊』 (2016년 6차 개정증보판, KRPIa, 이하 ‘연행록총간’).
- 구범진, 2014, 「조선의 청 황제 성질 축하와 건륭 칠순 ‘진하 외교」, 『한국문화』 68.
- 구선희, 2009, 「근대 한중관계사의 연구경향과 쟁점 분석」,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 구선희, 1999, 『韓國近代 對淸政策研究』, 혜안.
- 권석봉, 1986, 『청말 대조선정책사연구』, 일조각.
- 권석봉, 1981b, 「淸廷에 있어서의 大院君과 그의 還國(하)」, 『동방학지』 29.

- 권석봉, 1981a, 「清廷에 있어서의 大院君과 그의 還國(상)」, 『동방학지』 28.
- 권혁수, 2007,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 권혁수, 2000, 『19세기말 한중 관계사 연구』, 백산자료원.
- 김명호, 2008,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 김민규, 2002,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청일수호조규(1871년) -“조규체제”의 생성」, 『대동문화연구』41
- 김선민, 2012, 「외국과 속국사이-正史를 통해 본 청의 조선 인식」, 『사림』 41.
- 김용구, 2004,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도서출판원.
- 김정기, 1994. 『1876~1894年 淸의 朝鮮政策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종원, 1999, 『근세동아시아사연구』, 혜안.
- 김창수, 2016, 「19세기 조선·청 관계와 使臣外交」,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수, 2013, 「청의 詔書 반포사신을 통해본 조선의 지위」, 『역사와 현실』 89.
- 김형중, 2010, 「近代中國의 皇帝權力 : 光緒帝와 西太后」, 『역사학보』 208.
- 김형중, 2018,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희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노대환, 1997, 「1860-70년대 전반 조선 지식인의 대외인식과 양무 이해」, 『한국문화』 20.
- 夫馬進, 2008, 「1609년 일본의 류큐 합병이후 중국, 조선의 대류큐 외교-동아시아4국의 책봉, 통신, 그리고 두절」, 『이화사학연구』 37.
- 손성욱, 2022, 「19세기 지속된 전통적 조·청 관계의 의미」, 『중국근현대사연구』 93.

- 손성욱, 2017, 「최근 중국학계의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 (2007~2016)」, 『동양학』 69.
- 송병기, 1972, 「소위 「三端」 에 대하여 -근대 韓淸關係史의 한 연구」, 『사학지』 6-1.
- 송병기, 1985, 『近代韓中關係史研究 : 19世紀末의 聯美論과 淸朝交涉』, 단국대출판부.
- 신세완, 2022, 「조선후기 齎咨官의 사행 활동과 변화 양상」 『지역 과역사』50.
- 안외순, 1996, 「고종초기의 대외인식 변화와 친정-遣淸回還使 召見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0.
- 유바다, 2017,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유정, 2013, 「조선 역관 6인의 시선집 『海客詩抄』에 대한 고찰 -3종 필사본을 중심으로-」, 『한문학보』28.
- 이동욱, 2020, 「한국 학계의 근현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성과」,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이헌주, 2018, 『姜堯의 開化思想 研究』, 선인.
- 임계순, 2000,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 임준철, 2008, 「대청사행의 종결과 마지막 연행록」, 『민족문화연구』 49.
- 전해중, 1979, 『한중관계사 연구』, 일조각.
- 정용화, 2004,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문학과 지성사.
- 千金梅, 2013, 「壬午軍亂時期 韓中 文士들의 文化交流」, 『한국학 논집』 50.
- 한철호, 2019, 「초대 주미전권공사 朴定陽의 활동과 그 의의」, 『한국사학보』 77.
- 한철호, 2007, 「한국근대 주진대원의 파견과 운영(1883-1894)」,

『동학연구』 23.

한철호, 2010, 『한국근대 주일한국공사 파견과 활동』, 푸른역사.

李云泉, 2004, 『朝贡制度史论』, 新华出版社: 北京.

孙成旭, 2014, 「清代朝鲜最后赴京使团考」, 『历史档案』.

张存武, 1976, 「朝鲜对清外交的秘密经费研究」,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5.

森万佑子, 2013, 「朝鮮政府の駐津大員の派遣(一八八三—一八八六)」, 『史學雜誌』 122.

【Abstract】

A Study on the Dispatch and Role of Joseon Envoys to the Qing Dynasty in the Late 19th Century

Kim, Changsu

This study aims to pay attention to how envoys, a traditional diplomatic method, was operated in the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late 19th century. First, among the regulations of “Regulation for Transportation an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part related to the dispatch of envoys was reviewed. This is because the “Regulation for Transportation an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was created in the 19th year of King Gojong's reign, also included information on the diplomatic methods of both Joseon and Qing. Second,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frequency of sending envoys is identified. After the Manchu Invasion of Korea, Joseon sent high-ranking officials and interpreters as envoys. Thir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dispatch of envoys. Ami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vent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mission of envoys is an important point in grasping the role and function of envoys at that time. Through the above analysis, the role of envoy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Qing in the late 19th century will be identified.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reveal the aspects in which existing practices continue and change in a new international order.

Keywords: envoy, “Regulation for Transportation an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diplomat, traditional practice